

학생

제목: 학교 수업일 동안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

어플라이드 테크놀로지 차터스쿨(Charter School for Applied Technologies, CSAT)은 학교 수업일 중 학교 구내에서 학생들이 인터넷 연결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업적 책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조회, 점심시간, 휴식 시간, 자율학습 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 모든 수업 시간과 비 수업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인터넷 연결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또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콘텐츠(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타 모든 기기를 의미하고 포함합니다.

"인터넷 연결 기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 및 기타 통신 기기 등 비(非) 인터넷 연결 기기, 또는
 2.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CSAT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연결 기기
- b) "학교 수업일"이란 교육법 제3,604조 제7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학사일 전체를 의미하며, 조회, 점심시간, 휴식 시간, 자율학습 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수업 및 비 수업 시간을 말합니다.
- c) "학교 구내"란 학군 소속의 초등학교, 중학교, 주니어 하이, 직업학교, 고등학교, 차터스쿨 또는 BOCES 시설의 부동산 경계선 내에 포함된 건물, 구조물, 운동 경기장, 놀이터 또는 토지의 안이나 위 또는 내부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일 동안 학교 구내 어디에서든 인터넷 연결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학생은 학교 구내에서 학교 수업일 중 인터넷 연결 기기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a) 교장이 특정 교육 목적을 위해 승인한 경우
- b) 학생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의료 제공자의 진단서로 입증된 경우

(계속)

학생

제목: 학교 수업일 동안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계속)

- c)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웰빙을 일상적으로 책임지는 학생 신분의 보호자인 경우, 학교 심리학자,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학교 상담교사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또는

학생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 a)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포함된 경우, 또는
b) 504 계획에 포함된 경우

인터넷 연결 기기(휴대전화 등)의 교내 보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일 동안 인터넷 연결 기기를 지정된 교내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는 학교 내 보관 구역이 학생 사물함이나 개인 보관함으로 지정됩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은 학교 수업일 동안 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9~12학년 학생들에게는 기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 기능이 있는 보관 파우치가 제공됩니다. 이 파우치는 학생이 직접 소지하거나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파우치는 학생들이 일과를 마치고 하교할 때 열게 되어 있습니다. CSAT는 학생 수칙 및 학생 행동 강령을 통해 기기 보관 및 회수 절차를 안내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보관 시설을 이용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 수업일 중 학생에게 연락하는 방법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본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방법으로 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 a) 학교 행정실 전화: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학교 본관 사무실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행정실 직원은 학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학생을 행정실로 불러 보호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지정된 연락 이메일: 학교는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정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학교 직원이 모니터링하여 학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학생

제목: 학교 수업일 동안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계속)

- c) 교실 인터컴 시스템: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 본관 사무실은 교실 인터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직접 알리거나 학생에게 행정실로 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 학교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학교는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보안이 유지되는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학교 직원이 모니터링하여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e) 서면 메모: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서면 메모를 학교 본관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 직원은 이를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등록 시점과 매 학년 시작 시,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에게 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에게 연락할 방법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학교 수업일 중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에 대한 학생 징계

CSAT는 본 정책을 위반하여 인터넷 연결 기기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내 보관 정책의 준수를 거부하는 학생은 반복적인 불이행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은 불복종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게시 및 번역

CSAT는 본 정책을 웹사이트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합니다.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주 내 영어 능숙도가 제한된 개인이 사용하는 12개 주요 비영어 언어로 된 본 정책의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보고 및 시정 조치 계획

2026년 9월 1일부터, 그리고 이후 매년, 이전 학년도에 학교에서 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책 미준수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비식별화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및 본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구통계학적 불균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불균등한 집행 영향이 확인될 경우, 보고서에는 시정 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교육법 제2,803조

채택일: 2025년 6월 24일